

## 국회토론회

# 빅데이터 ·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 9. 1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 김우영 · 김현정 · 이정문 · 차지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토론회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순서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2시

2:00 ~ 2:10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사회 | 이광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

2:10 ~ 3:00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안 문제점  
|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토론

3:00 ~ 3:40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헌법학 박사)

3:40 ~ 4:00 플로어 토론 및 전체 토론

## 인사말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개인정보와 정보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주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최호웅 변호사님과 오병일 대표님, 활발한 토론을 이끌 어주실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님, 토론을 진행해주실 장선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님, 박소영 입법조사관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높은 식견을 귀담아 듣고 정무위 위원으로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은 국가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책임질 주요 육성 산업분야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저성장 탈출과 생산성 둔화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재정 투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취약해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 또한 산업의 진흥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AI 기술 앞에 위치, 취향, 행동 패턴 등으로 대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을 내세웠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조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미 2020년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함으로서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성능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최근의 법개정 방안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AI 시대, 주요 국책사업으로서 산업 진흥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모색을 통해 권리와 육성의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으로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국회의원 김우영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직결된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현 시대의 과제는 데이터 기술과 산업 진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활용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정 보주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제도적 균형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더 큰 지속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제안될, 고지받을 권리 확대, 민감정보 보호 강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보완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권리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성과를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 인사말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참 편리한 세상'이라는 말 뒤에, '왠지 좀 짐찜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인과 나눈 대화가 바로 광고로 뜨고, 내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아는 듯한 AI의 추천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편리함이 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AI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밀려, 정작 정보의 주인인 우리 국민의 권리는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이 AI로 내 정보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 법에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내 정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나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쓰였는지, 마치 '데이터 영수증'을 떼어보듯 당당하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AI의 발전을 막는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AI시대에 맞춰 그 안전 규칙을 함께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의견들을 모아, 기술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빅데이터와 AI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라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같이 애써 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호웅 위원님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님, 양질의 토론을 준비해주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정책과장님,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영 조사관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선미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오남용 대응을 통한 AI 신뢰기반 조성'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산업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빅데이터와 AI의 발전에 발맞추되, 개인정보보호법이 결코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받으며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균형 잡힌 개인정보 보호 방향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 차지호입니다.

오늘『빅데이터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새로운 산업과 삶,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정보와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닌 미래사회를 위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동반 과제입니다.

AI와 데이터 활용은 무궁한 기회와 사회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안해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하나의 규제가 아닌,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가능한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토대입니다. 국회 역시 국민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논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 일원으로서 AI가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한창민 |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자원처럼 수집하고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데이터를 학습 및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김현정·김남근·이정문 의원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회를 맡아주신 이광수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주신 최호웅 변호사님, 오병일 대표님, 권세화 실장님, 김직동 과장님, 박소영 조사관님, 장선미 위원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결정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며,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는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20년 전 헌법재판소가 경계했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볼 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를 자원으로 삼으며, 적절히 여과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

를 불러올지 정확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한국의 법제도와 행정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정보통신 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감독이 부실했던 결과 올해에만 벌써 SK텔레콤, 알바몬, 예스24 등 업계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 유출 사태는 2,300만 명이라는 피해자 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2022년 2월 해커의 접속 사실을 확인하고도 2025년 4월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을 줬습니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국내 1위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동안 정보보안 투자를 독려하거나 필요한 감독을 하지 않았던 국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봐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모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출신들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적 가치에 관한 인식 수준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하여 보고한 123개 국정과제를 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추진전략의 하부과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이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 거쳐가야 할 단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 내에서 논의의 균형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 또한 오늘과 같은 논의의장을 만들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는 통로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과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民間 분야까지 확대해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와 진정한 자유를 지키는 일에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 발제 】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안 문제점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1. 들어가며

- 현 정부는 최근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전략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핵심정책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22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뒷받침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있음
- 해당 개정법안들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정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개정법안들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만을 우선시 하여 정보주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음을 간단히 제기하고자 함
- 비록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이지만, AI 3강국, 소버린 AI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조급한 분위기 속에서도 실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함

## 2.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067호)

### 가. 법안의 취지

-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공개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 원료로, 실제 인공지능 기업들은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sup>1)</sup>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음
- 인공지능 학습에 공개 데이터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법안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제한적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음

### 나. 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스스</u> <u>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u> <u>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u> <u>이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u> <u>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u> <u>다.</u>

1)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

○ 현행법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제1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제2호)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제3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제4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7호)

○ 해당 개정법안은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요건 중 ‘정보주체의 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개정법안 제4항)

#### 다.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

○ 해당 개정조항은 처리의 적법요건 추가인지, 동의 요건의 완화인지 모호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해당 개정조항은 처리의 적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지 않고, 제4항이라는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해당 개정조항이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의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인지 불분명함

◆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해당 개정조항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판결에 대하여도 ‘묵시적 동의’를 추정하는 확장해석을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형해화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했음

- 해당 조항이 ‘동의 요건의 완화’라고 해석될 경우, 해당 조항 역시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해석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상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 동의에 의한 처리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동법 제15조 제2항)
  - ◆ 또한,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해당 개정조항이 ‘동의 요건’의 완화 규정이라고 한다면, 역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 준수 역시 가능해야 할 것임
  - ◆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개정조항에 의하여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수집은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이행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보여짐
  - ◆ 따라서, 해당 규정을 ‘동의 요건 완화’라는 취지로 입법하고자 한다면 체계적 해석 상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입법일 수 있다는 의견임
- 해당 개정조항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해외에서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우려가 있음
  - ◆ 아직까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비록하여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중 ‘공개된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별도로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GDPR 적용을 받은 일부 국가들 중 ‘공개된 정보’의 활용의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의 ‘정당한 이익’ 규정(제6조 1.(f))<sup>2)</sup>을 제시하고 있기는 함

---

2) 제6조 처리의 적법성 제1항 (f)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특히 그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 및 자유가 해당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f)는 공공당국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위하여 실행하는 처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 GDPR 규정 상 ‘정당한 이익’ 규정 자체에서 “그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 및 자유가 해당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해당 개정조항은 ‘공개된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GDPR 상 ‘정당한 이익’과 같은 정보주체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면, ‘공개된 정보’이면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단지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 따라서, 해당 개정조항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공개된 정보’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해당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 ◆ 또한, 해당 개정조항이 GDPR ‘정당한 이익’ 규정과 달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소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의사임.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학습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될 경우,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습데이터 사용까지 정보주체가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은 드물다 할 것임

-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스스로 공개한 목적(정보의 공유 등)의 범위에 ‘인공지능 학습 목적’이 포함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냅<sup>3)</sup>”
- 따라서 해당 개정조항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그 입법취지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적정한 방법인지에도 의문이 있음

## 2.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58호)

---

3) 2025. 4.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가. 법안의 취지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여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별도의 특례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함임

## 나. 법안의 내용

구 분	내 용
제3장 제5절	<절 제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특례 내용 (안 §28의12①)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해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 처리 가능
특례 적 용 요건	<p>&lt;실체적 요건&gt;</p> <p>① 개인정보를 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곤란 ②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 ③ 공공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 포함+정보주체·제3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현저히 낮을 것</p>
	<p>&lt;절차적 요건&gt;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보호위 심의·의결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p>
특례 적용시 의무	<p>&lt;위험요인평가 실시 및 보호위 제출&gt;</p> <p>&lt;해당 요건&gt; ① 또는 ②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개인정보 처리 ②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p>
	<p>&lt;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추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정보 처리의 구체적 목적과 개인정보의 유형</li><li>-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주요내용</li></ul>
특례 제한 (안 §28의13③·④)	<p>&lt;내용&gt;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p> <p>&lt;사유&gt;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전부 제한) ② 특례 적용 요건 및 조건 미충족 ③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공지능기술개발이 명백히 불가능 ④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개인정보 처리 시작x ⑤ 위험요인평가 미실시 또는 평가 결과 미제출</p> <p>&lt;절차&gt; 보호위 심의·의결</p>

관리·감독 (안 §28의13①·②)	보호위가 주기적으로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 관리·감독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계자에 자료제출 요구)
------------------------	---

(표 출처 : 2025. 4.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처리 가능하게 함(안 제28조의12 제1항)

- 실체적 요건

- ◆ 개인정보를 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곤란
-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
- ◆ 공공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
-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 절차적 요건

- ◆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을 것

○ 해당 개정조항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됨

#### 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인공지능 학습의 문제점<sup>4)</sup>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embedded)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 리스크(memorization risk), 프롬프트 공격<sup>5)</sup>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인공지능 서비스 단계에서 암기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운용되는 등 인공지능 학습 단계보다 정보주체 권익침해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7.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제3면

5)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서 사용자가 악의적인 입력을 넣어서 원래 동작과 다르게 동작하게 만드는 것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하여 원본 데이터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음

- EU GDPR에서는 공익적 기록보전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는 본래의 목적과 양립되지 않은 적법한 추가 처리라고 간주함 (동법 제5조 제1항 (b))
- 하지만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준수되도록 가명처리를 비롯한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함(동법 제89조 제1항)

○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이라는 목적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상 무제한 확대 해석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질적인 기술개발의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 정보는 그 목적의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3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법에서 구체화 한 것임
- 그런데, 해당 개정조항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이 아니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 ◆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시 근거 법률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더군다나, 해당 개정조항에 의하여 정보주체는 동의권 행사라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제한 시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임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내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현저히 미비함

- 해당 개정조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예외(심지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규정은 부족함

- ◆ 해당 개정조항에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절차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하며 △사전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 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정하고 있음
- ◆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불과함
- ◆ 원본 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안자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특성에 기한 학습데이터 기억 및 출력 등에 관한 대비가 필요한 바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강화된 조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함
- ◆ 해당 개정조항에 과연 ‘강화된 조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이며, 해당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원본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 현재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통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중요한 지점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인공지능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권리로 법에 보장하는 것이라고 봄

○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인공지능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도 원본데이터까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축소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음

- 해당 개정조항은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이제 정보주체의 원본 데이터의 활용까지 인정하고자 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성급하게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향후

에 등장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이 당연한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

- 우리는 제대로 익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실명, 계좌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사건”을 경험한 바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임
  - ◆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 상 학습데이터를 내재적으로 기억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원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범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봄
- 마지막으로, 해당 개정조항에서는 특례적용의 실체적 요건으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익명 또는 가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가능하나 익명으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가 엄격한 제약이 적용되는 가명처리 특례규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 【 발제 】

### 시민사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제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1. 제안 배경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몇 년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미흡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수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 왔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인지하고,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러한 조건이 보장되는 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수집, 집적되고 여러 사업자 간에 공유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애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제안해왔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병덕, 배진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음.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의제와 최근의 기술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의제를 포함하여, 22대 국회에서도 시민사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물론 시민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안으로 정리되지 않은 의

제도 있는 바, 추후에도 계속 시민사회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안해나갈 예정임.

##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

### 1)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됨

종전에는 동의를 받을 때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근거(동의인지 법률인지)에 의해 수집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는지, 누가 얼마나 오래동안 보관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너무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나 정보주체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노동계약 이행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건강보험처럼)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규정해두어야 하는데,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존재한다는 답변은 40%에 불과했음. 이에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CCTV, 지문인식기, 네트워크 모니터링장치, PDA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19 검사 및 진단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근거로 수집되고, 누가 얼마나 오래동안 보관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함.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부나 기업에게도, 정보주체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함. 동의가 아니라 법률, 계약, 정당한 이익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대할 수 있음.

한편,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다만,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정보주체가 먼저 알면 곤란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등 사안의 특수성이나 이용자 실의 등에 대한 예외 없이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고지를 규정할 경우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회 보고서의 의견은 정보주체에 고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기는 하지만,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될 수 없음. GDPR의 경우에도 동의 외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정보주체가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경우 고지 예외를 두고 있음. 이에 동의 외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되,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을 경우, 계약 등으로 정보주체가 해당 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범죄 수사 및 고소 제기 등 정보주체가 알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고지 예외를 두면 될 것임.

현행	개정안
<3항 신설>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p> <p>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3항 신설>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p>

	<p>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li> <li>2.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li> </ol> <p>④ (현행과 같음)</p>
<p>&lt;4항 신설&gt;</p>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p> <p>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li> <li>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li> </ol>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p>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p>

<p>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lt;신설&gt;            &lt;신설&gt;</p>	<p>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u>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u>  <u>1의3. 프로파일링 여부</u></p>
--	--

## 2)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

종전에는 범죄의 수사목적에 대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하였던 것을, 제3자 제공의 예외 조항에서 삭제하여 수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비함.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지금은 모두 무죄로 판명난) 철도노조 파업을 탄압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참가 노동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2~3년치 건강정보를 제공받았음.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공단이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를 경찰에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음.(2014헌마368) 현재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건강상태에 대한 종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고, 이에 위헌을 결정하였지만,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해서는 각하로 결정하였음.

반면, 현재는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합헌을 결정하였음. 현재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사실상 해당 개인정보가 수사에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상 제공할 수 밖에 없음.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덜 보호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라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p>1. ~ 6. (생략)</p> <p>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8. · 9. (생략)</p>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p>1. ~ 6. (생략)</p> <p>7. &lt;삭제&gt;</p> <p>8. · 9. (생략)</p>

###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 확대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됨

종전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통지해야 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예를 들어, 어떤 마케팅 업체가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이를 스팸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알 수 없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스팸 문자와 메일들이 이렇게 수집되어 활용되는 것일 수 있음.

또한 그 기준이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로 높게 설정되어 있

어, 예를 들어 민감정보를 처리하더라도 5만명 이하거나, 개인정보가 100만명만 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한편,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다만, 현행법은 중소·영세사업자에게까지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도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범죄 수사 시 정보주체가 먼저 알면 곤란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등 알리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수사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경우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통지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근거가 없음. 현행 규정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미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복적으로 고지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주체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아님.

또한,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는 해당이 되지 않음.

현행	개정안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p><u>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u></p>	<p>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삭제&gt;</p>
<p>③ <u>제2항 본문</u>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u>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u>제1항과 제2항 본문</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li> <li>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p>④ <u>제1항</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li> <li>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 4)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항목을 법으로 올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현실을 고려하여 확대 규정함. 즉, 정보주체가 의식불명인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일시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또한, 개인정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 제18조제2항 제5호부터 제9호에 따라 민감정보가 아닌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의 보호수준을 달리한 것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를 법에서 규정하여, 동등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지금은 모두 무죄로 판명난) 철도노조 파업을 탄압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참가 노동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2~3년치 건강정보를 제공받았음.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공단이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를 경찰에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음.(2014헌마368) 현재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건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고, 이에 위헌을 결정한 것임.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였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만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였다면 합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임.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이나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함.

현행	개정안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 처리자는 <u>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u>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 처리자는 <u>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p>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i> </ol>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탈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li> <li>3. 인종·민족 등에 관한 정보</li> <li>4.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하거나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li> <li>5.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li> <li>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li> <li>7.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정보</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대하여는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다른 법령에서 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i> <li>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li> </ol>
---	--

	<p>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공중위생, 방역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

##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와 비슷한 취지로 제24조 개정.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에서는 제외함.

현행	개정안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p>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p> <p>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p>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p> <p>2.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p> <p>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p>

	<p>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p> <p>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p>
--	--

## 6)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안전, 범죄 수사 등과 관련된 일부 개인정보파일은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이에 모든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공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배진교 의원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수사와 관련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노출되는 경우 수사기법의 노출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한된다는 입장임.”

이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보안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p>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p>	<p>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생략)</p> <p>②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p>

<p><u>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u></p> <p>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p> <p>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p> <p>③ (생략)</p> <p>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p>
--	---

<p><b>관련 사례와 개정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국정감사 자료(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83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개인정보 37억건을 보유하고 있음<sup>1)</sup>. 그러나 자세한 현황은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에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찰위원회가 경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즉, 경찰의 개인정보 파일 및 시스템에 대해 (경찰청 스스로 외에) 사전적,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경찰의 개인정보 파일과 시스템은 국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독의 부재는 큰 문제임.</li> <li>- 이는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2015년 이탈리아 기술업체인 해킹팀이 해킹을 당하면서 국가정보원이 RCS라는 스파이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처럼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으면, 경찰이나 국정원이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도입할 수 있음.</li> </ul>
---

물론 보안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회와 같은 감독기관이 감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 수집은 필요함.

## 7) 정보주체의 열람권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됨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서는 열람권의 대상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한지가 모호함. 이에 제35조에서 열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1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내 개인정보를 처리한 방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열람청구를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처음에는 제대로 열람 결과를 받지 못했었음. 이에 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도 열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하위 법령과 양식에도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4\\_0000117579](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4_0000117579)

## 8) CCTV 안내판 미설치 과태료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여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5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원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되었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29)'에 따르면, "CCTV 안내판 미설치, 손해배상의 보장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조치 명령을 한 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개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안내판이 없으면 피해를 인식하기도 힘들고 CCTV를 인지했더라도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내판 미부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이에 안내판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호. 생략 3호 <신설>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이후 4호부터 하나씩 뒤로 이동)

### 관련 사례와 개정 필요성

- 전북도민일보, “도심 곳곳이 CCTV”…안내판 없는 CCTV 설치·운영에 ‘시민 불쾌감’ 확산 (2025.3.17)
- 경기일보, 안내판도 없이… CCTV 은밀한 촬영 '불쾌한 시민들' (2025.3.12.)

### 3.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 1)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처리로 명확하게 규정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당연히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는 점은 문언적인 해석, GDPR 등 해외 규범 상의 해석,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 등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가명처리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황당한 해석을 내렸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대법원의 무리한 해석을 바로잡고 박탈당한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가명처리가 개인정보의 처리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u>가명처리</u>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2) 개인정보 정의 규정

일부 전문가들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개인정보를 협소하게 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를 협소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 상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문구 중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가져온 것인데, GDPR 서설

26(recital 26)은 “자연인이 식별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나 다른 사람(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other person)에 의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개인 선별(single out)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개인을 알아보는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제도와도 충돌함. 예를 들어, A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B에게 제공하는 상황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받는 정보가 가명정보가 아니라 익명정보로 해석될 수 있음. B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공 받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임. 이는 현행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충돌함.

또한, 현재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맞춤형 광고를 위한 기기 식별자의 개인정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해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과 연결된 기기 식별자 역시 개인정보로 규정하고자 함. 유럽 및 미국(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의 경우 쿠키 식별자 등 기기 식별자를 개인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p> <p>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p> <p>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p> <p>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p> <p>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u>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u></p>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라. IP 주소, 쿠키 식별자, 모바일 광고 식별자와 같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개인과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 유럽 개인정보감독기구이사회(EDPB) 웹사이트

[https://www.edpb.europa.eu/sme-data-protection-guide/faq-frequently-asked-questions/answer/what-personal-data\\_en](https://www.edpb.europa.eu/sme-data-protection-guide/faq-frequently-asked-questions/answer/what-personal-data_en)

What is personal data?

Examples of personal data include:

- name and surname;
- a home address;
- an email address;
- an ID card number;
- location data;
- an Internet Protocol (IP) address;
- a cookie ID;
- bank accounts;
- tax reports;
- biometric data (like fingerprint);
- a social security number;
- passport number;
- test results;
- grades in school;
- browsing history;

- photograph of individual;
- vehicle registration number etc.

##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 CPRA 1798.140. Definitions

(v) (1)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identifies, relates to, describes, is reasonably capable of being associated with, or could reasonably be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particular consumer or household.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f it identifies, relates to, describes, is reasonably capable of being associated with, or could be reasonably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particular consumer or household:

(A) Identifiers such as a real name, alias, postal address, unique personal identifier, online identifier, Internet Protocol address, email address, accoun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 passport number, or other similar identifiers.

(aj) “Unique identifier” or “Unique personal identifier” means a persistent identifier that can be used to recognize a consumer, a family, or a device that is linked to a consumer or family, over time and across different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device identifier; an Internet Protocol address; cookies, beacons, pixel tags, mobile ad identifiers, or similar technology; customer number, unique pseudonym, or user alias; telephone numbers, or other forms of persistent or probabilistic identifiers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a particular consumer or device that is linked to a consumer or family.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family” means a custodial parent or guardian and any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over which the parent or guardian has custody.

## 4. AI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1) 프로파일링 규정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됨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이며,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프로파일링이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는 바,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함.

프로파일링에 대해 정의하지 않아도 ‘해석’에 의해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의 처리로 규정할 수 있음. 현재 이 정의 규정이 없어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EU GDPR에서도 프로파일링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로파일링 처리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함으로써 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정의) 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말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u>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u> )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

<p>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p>	<p>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p> <p><u>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u></p> <p><u>1의3. 프로파일링 여부</u></p>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u>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 제1</p>	<p>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u>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u>)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p>

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를 보완

현행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는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명정보를 애초 수집 목적외로 활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에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과학적 연구나 통계작성의 경우에만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배진교 의원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다만, 가명정보가 그 자체로 통계작성 등 제한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한 정보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계작성 또는 과학적 연구 등을 허용하는 대신, 가명정보의 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 기회가 차단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실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이 국가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임.”

국회 검토보고서 의견과 관련하여, 제28조의3이 없다고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고, 제28조의2가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로 제한되므로, 제28조의3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과 관련하여,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고 빅데이터 연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과학적 연구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모든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연구의 공익성이 큰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으로서 연구윤리에 부합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3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여야 하며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현행 유지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현행 유지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생략)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p>&lt;신 설&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또는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명정보의 식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시간·비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2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처리목적 달성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경우</p>

### 3)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규범으로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 원칙을 명시함. 이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지만, 수반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원칙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를 시행하는 것은 법에 아예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많은 SNS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 드러나도록 하는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광고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고, 이용자가 일일히 찾아서 ‘거부’ 설정을 해야함.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설정을 준수하도록 하면, 가장 안전한 옵션을 기본 설정으로 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한편,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배진교 의원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다만, 현재 ‘개인정보 침해적 기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령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기술 적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신설은 기존 법령과 중복되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산업계(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조치 기준이 있지만,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을 지키지 않는 서비스들이 여전히 많음. 또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라는 용어를 이미 쓰고 있는 바,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p>제29조의2(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설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위험성</li><li>개인정보 침해적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는지 여부</li><li>비용</li><li>개인정보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li><li>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준수 및 이를 위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li></ol>

	<p>고 정하는 사항</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기본설정을 통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기본설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명백한 의사로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32조의2에 의거한 인증은 제1항에서 정한 설계기준 및 제2항에 규정된 기본설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p> <p>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설정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p>
--	---

####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영향평가 수행의 조건을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또는 Privacy Impact Assessment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의무화되어 있음.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보다 더욱 폭넓은 평가임. 신기술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더 잘 활용되고 인권영향평가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제주도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프라이버시영향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프로젝트 이행 전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프라이버시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및 프라이버시 기본설정(privacy by default)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음.

한편,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배진교 의원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다만, 영향평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민간부문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 양상이 분야별로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민간부문에 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 후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민간으로 영향평가 대상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영세·중소기업 등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평가 대상별 수행 시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영세·중소기업 등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중소기업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면 될 것임. 또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임. 영향평가는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해야 하고, 그것이 기업의 책임성임.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의 판단은 해당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음. 또한, 민간 자율적으로 지금도 수행할 수 있으나, 어떠한 강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민간에서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임.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u>공공기관의</u> <u>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u> <u>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u> <u>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u> <u>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u> <u>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u> <u>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u> <u>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u>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u> <u>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위험</u> <u>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u> <u>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u> <u>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u> <u>다.</u> <u>1.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u> <u>다)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u> <u>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u>

	<p><u>예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에 근거하여 개인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평가하여 해당 평가에 근거한 결정이 해당 개인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u></p> <p><u>2.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u></p> <p><u>3. 공개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u></p> <p><u>4. 기타 처리의 성격과 범위, 상황, 목적을 참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u>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u></p>	<p>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u>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u></p>
<p>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li> <li>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li> <li>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i> </ol>	<p>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과 범위, 맥락, 목적</li> <li>2.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의 도입</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그 밖에 <u>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u></li> </ol>
<p>⑪ <u>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u></p>	<p>⑪ <u>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파일</u></p>

<p>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u>하기</u>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u>실시하기</u>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⑫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⑬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처리작업, 제2항에서 정한 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9항에서 정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공개의무자 및 공개대상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p>

##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는 바,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이 법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자 함. □

현행	개정안
<p>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p>	<p>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p>

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토론 】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 토론 】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

- AI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 활용 수요가 급증, 위원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 ‘에이전트 AI’, 초개인화 등 AI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AI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거스르기 어려운 이러한 AI 시대 발전흐름 속에서 AI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일률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는 AI 기술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법률을 통해 각 부처에서 개별 사례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AI 학습에서의 개인정보 리스크는 대규모·비가역성의 특징이 있어 유출·침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초기부터 ‘안전 가드레일’을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AI 원본데이터 학습을 위한 입법화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 관련 법률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그 목적과 취지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며, 개인정보 관련 취약점을 인지하기 위한 실태점검이나 사전 안전조치 강화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안전 담보 기능을 상당 부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처리의 효용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찾고, AI 학습 환경에 맞는 비례적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AI 원본 활용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입법 방안임
- 물론 오늘 발제의견과 같이 현재 'AI 특례안'(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수정해 나갈 것임
  - 발제의견에 대해 몇 가지 부연하자면, 'AI 특례'는 AI 원본 학습을 포괄적·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고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의 신체·생명 안전, 범죄예방 등 AI의 개인정보 학습을 통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허용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본 활용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임
- AI 특례 관련 제언 외에도,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김태선의원안)에 대한 문제제기,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검토해 나가겠음 □

## 【 토론 】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발제에서는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남용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법제가 정보주체의 알 권리나 통제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본 토론문은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법 정책 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1. 국제 규범과의 조화와 개별적 접근

인공지능 경쟁에서 데이터 접근성이 핵심이며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됩니다. 반면,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따라서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정당한 이익’ 근거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인공지능 개발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의 경우, 국경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어 각 국가가 자유롭게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제 규범 보다 보수적인 규제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성과 국제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되, 이를 일률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별 접근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을 찾아가거나, 정보주체 권리를 보강하기 위한 별도 수

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면,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정 민간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관련 법제 마련을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정립, 보호 연령 확대(14세→18세),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알림 제도 확대 및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 맞춤형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한 등 핵심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를 통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 친화적 고지 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법 시행 후 2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 요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한 법제 정비와 실질적인 이행 감독이 필요합니다.

## 3. 언어 기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재검토

ChatGPT, Gemini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대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대화 기반 상호작용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복잡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친숙한 수단을 통해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입력하게 만드는 유인구조를 형성합니다. ‘대화’라는 형태는 사용자에게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인상을 주어 사용자는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고민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발화를 저장되어 학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sup>1)</sup> 사회적 유대감 또는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끌어내도록 설계된 대화 인공지능을 502명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사용자는 자신의 대화에 출신 국가, 건강 상태,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이야기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다”와 같은 친화감을 형성하는 응답을 하면 사용자의 인지적 경계가 낮아져 개인정보 노출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취약성이 아니라 대화 방식 설계 그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환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행 법제에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흐름 속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그 범위와 성격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워, 정적인 정보 수집과 사전 동의 방식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기술·산업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지하는 것은 대화형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기반 상호작용에 맞춘 맥락적 설계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모색이 향후 진행되길 바랍니다. □

---

1) Xiao Zhan et al., “Malicious LLM-Based Conversational AI Makes Users Reveal Personal Information,” arXiv preprint arXiv:2506.11680 (2025).

## 【 토론 】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인간취약성연구소 대표, 헌법학 박사)

중요한 자리에서 토론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제문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들의 발표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발표자분들께서 충분히 많은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이하 ‘스크래핑’이라 함)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권 관련 법적 쟁점을 매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 1. 정보주체 동의 없는 웹 스크래핑 관련 법적 쟁점

#### (1)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 ① 정보주체의 동의권

○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이름, 이메일 주소, SNS 계정 등은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함.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개되는 것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되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님.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스크래핑 허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최호옹 변호사의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의안번호 8067)의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sup>1)</sup> 제4항에 다음과 같은 조

1)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음.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 이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일부를 그대로 입법한 형태임.<sup>2)</sup>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이 이 판결문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된 정보를 가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의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설시한 판결로 정보주체의 동의권 적용 범위를 입법자가 아닌 사법부가 축소한 판결임.<sup>3)</sup>

---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② 스크래핑된 정보의 주체의 정보삭제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의 보장하고 있음. 스크래핑 후 TDM을 통해 AI 개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AI가 개인의 정보를 한 번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면, 그 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웹페이지, 문서, SNS 게시물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LLM은 정보를 하나의 위치에 저장하지 않고, 수많은 매개변수(뉴런)에 분산시켜 학습하기 때문에, 특정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 만약 이를 시도하려면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켜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컴퓨팅 자원이 필요함.

## ③ 아동청소년 정보권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웹 스크랩핑 허용은 이러한 아동 개인정보를 무력화할 수 있음. 2023년 9월 15일에 익명의 미성년 원고들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했던 P.M., et al. v. OpenAI LP, et al. 사건에서 문제가 된 쟁점 중 하나가 OpenAI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과 연방법률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이 금지하는 아동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주장이었음.

## (2) 스크래핑 대상 웹사이트 사업자,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 등의 권리 침해 가능성

○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용 약관에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함. 현재 제안된 법안이 이러한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것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스크래핑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 (3) 저작권

- AI 관련 소송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 문제이며, 여기에는 스크래핑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포함됨. 현재 계속 중인 *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 et al.*은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AI 모델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생성하여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임. AI 개발 관련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없는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것은 불완전한 입법이 될 수 있음.

### (4) 웹 스크래핑 거부권의 실효적 보장

- 기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웹 스크래핑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스크래핑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음.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제언

### (1) 분절적 개정의 한계 극복 필요

- 위에서 살펴본 웹 스크래핑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과 연결되며, 실제 정보주체의 동의권, 저작권 등 쟁점을 공유함.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법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DM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음.

웹 스크래핑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함</li><li>◆ 웹 스크래퍼(scraping)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HTML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함</li><li>◆ 자연어 처리(NLP), 통계학, 기계 학습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문서 분류, 감성 분석, 키워드 추출, 토픽 모델링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li></ul>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스크래핑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내 다른 조항과의 조화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 (2) 사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월권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입법 필요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배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허용 요건을 인정하여 판시한 사건임.<sup>4)</sup> 최근 대법원은 정보의 “가명처리”를 이 법 제2조 제2호의 정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 제37조 제1항의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입법 목적과 법문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권한없이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아님.<sup>5)</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일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본 안내서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라고 명시함. 그러나 이 문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가능함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기관이 법적 효력 없이 기업과 국민에게 특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함. 실제로 이 문서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인용되고 있음.

---

4) 참고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GDPR의 규제 대상이 됨.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GDPR의 해석상 누구나 볼 수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허용되지 않음. GDPR 제14조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얻은 경우,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와 그 제공 시기, 제공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유사한 규정을 제20조에 두고 있음

5)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국회 입법이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국내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연구되는 유럽연합의 GDPR부터 AI ACT에 이르는 정보 관련 법률은 해설전문을 통해 각 조항이 어떤 한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유럽 연합 내 통일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의 보장과 제한 관련 해당 법의 해석과 실무상 운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법제정기관이 함께 제시함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위법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수행함. 이러한 전문을 붙일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정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음. □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일 2025.9.11.

발행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 김우영 · 김현정 ·

이정문 · 차지호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문의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참여연대 02-723-0666

※ 본 자료는 공동주최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